



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실



이민자 지원 서비스 집행법

사기 방지에 도움 제공



**제공자는 주 비즈니스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민자 지원 서비스 제공자(제공자)는 이민자가 법률 시스템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불행히도, 몇몇 부도덕한 제공자가 취약한 소비자를 속여 자주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제공하거나 비인가 법무 관여와 같은 이들의 행실은 자신의 소비자가 잘못된 서류를 접수하거나, 중요한 기한을 놓치거나, 신청이 거절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민자 지원 서비스 집행법은 이민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제공자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 고용에 비해 매력적으로 보이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법률 상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 법률 접속 프로그램실(U.S. Office of Legal Access Programs, OLAP)은 비영리 및 기타 특정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제공자는 OLAP가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공자는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 리뷰 사무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를 포함한 어떠한 이민 당국 앞에서도 귀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제공자가 하는 일은?

제공자는 법률 상담 제공 또는 이민 당국에 대해 귀하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문서 공증.
- 서식 번역.
- 신청서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 작성 서비스를 통한 고객 지원.
- 이민 신청서 제출에 요구되는 문서의 확보.

이민자 지원 서비스 집행법

이민자 지원 서비스 집행법(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의무적 사항

- 계약서는 소비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제공자는 그 계약서의 영어 버전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항목화되어 있고, 각 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수수료 및 비용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공자는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해야 합니다.
- 계약서엔 “귀하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겐 3 영업일 동안 어떠한 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요금이 있다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소 고지는 모든 이민 지원 서비스 제공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소 서식 작성을 통해서나, 달리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제공자가 만약 환불해 주어야 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재무 보증이 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엔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 리뷰 사무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및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를 포함한 어떠한 이민 당국 앞에서도 귀하를 대리하기 위해 법률을 다루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접속 프로그램실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법률 상담에 대해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료 추천을 받으려면, 신 미국인실 핫라인 전화 (전화번호) 번이나, 뉴욕주 법무장관실 전화 (전화번호)번 또는 귀하의 지역 지방 검사나 검찰관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엔 소비자에 의해 제공된 문서 원본은 요금 분쟁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든 제공자가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엔 “본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법률에 정한 바가 아닌 한, 귀하에 대한 어떠한 정보든 공개하거나, 귀하의 인지 및 동의없이 이민국이나 기타 당국에 귀하를 대신해 어떠한 서식이나 문서도 접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정보를 공개했거나 USCIS 또는 기타 당국에 어떠한 문서든 접수했다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증(채권, 배상 계약서 또는 취소불능 신용장)의 유지

-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 또는 제공자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제공자가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50,000의 재무 보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제공자의 수입이 어떠한 12개월의 기간 동안이든 \$250,000를 초과한다면, 보증은 지불 수수료 및 보상액의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고지

제공자는 자신의 사무실과 광고에 영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언어로 두가지의 고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제공자가 변호사 또는 미국법무부(OLAP)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아님을 지시하는 고지.

-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을 3 영업일 내에 취소할 수 있고 자신의 문서 및 지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고지.

광고: 어떠한 광고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변호사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OLAP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금하는 사항

법률에 따라 제공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법률 상담 제공.
- 변호사, 공증인(주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공인 대리인, 공증인(notario publico, notario), 이민 전문가, 이민 컨설턴트라는 직함의 사용.
- 그/그녀가 USCIS,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 리뷰 사무국 또는 기타 어떠한 정부 기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
- USCIS 또는 기타 당국에 소비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민자 신분을 악화시키겠다고 협박.
-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 앞으로 수행될 서비스 또는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 또는 보유.
- 소비자가 정부 문서에 대해 또는 정부 공무원과의 논의 시 허위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조언, 지시 또는 허용.
-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인지 및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USCIS 또는 기타 당국에 서식 접수.
- 소비자에게 정부 기관에 접수한 문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문서 원본 반환을 거부. 문서 원본은 요금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작성.
- 표현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고 보장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은 한, 소비자에게 보장 또는 약속을 함.
- 공식 문서의 전달, 제공 또는 제출에 대해 또는 제공자가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서비스의 추천에 대해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음을 표시.
- 개인의 이민자 신분의 결정에 대해 조언을 제공(그/그녀에게 그러한 결정과 관련해 정부 서식의 답변에 대해 조언하는 등).
- 변호사 또는 이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든 추천에 대해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을 청구.

- 신청서의 우수한 점수 외에, 어떠한 이유로든 우호적인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 주거나 발행할 정부 직원과의 특별한 관계 또는 접촉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민 또는 기타 관련 정부 혜택 절차의 급행 처리를 약속.
- 고의로 개인 또는 가족의 이민 또는 기타 정부 혜택에 대한 적격성에 대해 오도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비시민에게 제공.

누군가가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iapps.courts.state.ny.us/attorney/AttorneySearch
를 방문하십시오

누군가가 공인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justice.gov/eoir/recognized-organizations-and-accredited-representatives-roster-state-and-city
를 방문하십시오

문의처

만약 귀하께서 해당 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제공자 사기의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이 들면, 법무장관의 이민 사기 핫라인 전화 (866) 390-2992번으로 전화하거나 ag.ny.gov를 방문하십시오.

저희는 귀하의 이민자 신분에 대해 묻거나 귀하의 정보 공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